

수수료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정일 2021. 3. 30.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(이하 “관련 법규”라고 한다)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리) 이 기준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.

1. 보수

- 가. 매입보수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채산을 매입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- 나. 운용보수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채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- 다. 매각보수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채산을 매각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- 라. 성과보수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- 마. 판매회사보수: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식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- 바. 신탁업자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- 사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사무처리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
2. 수수료

- 가. 판매수수료: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
- 나. 환매수수료: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를 청구하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

제4조(수수료의 부과기준) ① 회사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회사는 새로운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수수료는 기존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보수 또는 수수료 수준을 일관되게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.

제5조(수수료의 부과절차) 회사는 수수료의 부과절차를 정함에 있어 운용자산의 특성 및 규모,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집합투자기구 별로 수수료 수준을 결정한다.

제6조(총비용비율 한도의 관리)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과도한 비용발생을 지양하기 위하여 총비용비율한도(TER: Total Expense Ratio)를 관리하며 항상 투자자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한다.

제7조(수수료의 설명의무) 회사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수료의 인상) 회사는 법 제189조 제2항 제1호 또는 법 제195조 제1항 제1호의 보수 또는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하여는 미리 법에 따라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
제9조(공시 및 통지)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회사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.